

# 정책참고자료

2018-5호

설기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 목 차

|   |                                                                  |    |
|---|------------------------------------------------------------------|----|
| 1 | 행정안전부                                                            |    |
|   | 회전교차로 설치로 교통사고 줄고 통행시간도 빨라졌다                                     | 4  |
|   | - 행정안전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결과 발표 -                                    |    |
| 2 | 국민권익위원회                                                          |    |
|   | 국민권익위, 3월말까지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 11 |
|   | - 행정서류 중복제출, 과도한 행정벌칙 등을 국민생각함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 -                     |    |
| 3 | 중소벤처기업부                                                          |    |
|   | 중기부, 전통시장 화재안전 제품기술 전시회 개최                                       | 14 |
|   | - 누전차단기술, 초기화재 진압기술 활용 가능성 점검 -                                  |    |
| 4 | 교육부                                                              |    |
|   |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법적 근거 마련                                         | 18 |
|   | - 교육부,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br>"장애학생도 보다 체계적인 진로교육으로 미래 설계" |    |
| 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효과 톡톡                                   | 21 |
|   | - 과기정통부, 2017년 수혜기업 547개사 성과발표 -                                 |    |
| 6 | 문화체육관광부                                                          |    |
|   | 문화영향평가로<br>문화적 도시재생의 밑그림을 지원한다                                   | 26 |
|   | -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18개 사업 대상 문화영향평가 실시 -                          |    |
| 7 | 농림축산식품부                                                          |    |
|   | 농업 농촌의 희망, 청소년 미래농업을 배우다                                         | 29 |
|   |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금년도 "미래농업선도교 열린강좌" 3회 운영 -                          |    |

## 8 환경부

### 자연공원 내 대피소에서 음주 못한다

-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에서 음주 근절 및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  
늘린 '자연공원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33

## 9 고용노동부

### “출산·육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은 국가의 책무”

- 韓.獨 노동부 장관 여성고용문제 해결 위해 머리를 맞대다 - 39

## 10 여성가족부

### 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방식 개선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44

## 11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종합대책 확산 설명회 ... 6일 17개 지자체 대상 실시

- 보행자 중심지역 주도 정책 확산 위한 역할 강조 - 57

## 12 해양수산부

### 해수부, 2018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 사업자로 인천시.강원도.전라남도 선정 - 59

## 1

## 행정안전부

### 회전교차로 설치로 교통사고 줄고 통행시간도 빨라졌다

- 행정안전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결과 발표 -

◆ 경남 창원시 상남동 오거리는 신호주기가 불필요하게 긴 곳이었다. 또한 늦은 밤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하는 차량이 많아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도 많았다. 그러던 이곳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후 차량 소통이 원활해지고, 보행자들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어서 지역 주민들은 인근 교차로에도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 부산 사하구 당산나무 오거리는 점멸신호등으로 운영되어 여러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2014년에만 8건의 교통사고로 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대안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후 2016년에는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신호등이 없거나 신호통제성이 낮은 교차로를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시행한 결과, 해당 교차로의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56.8%, 교통사고 건수는 50.5% 줄어 들었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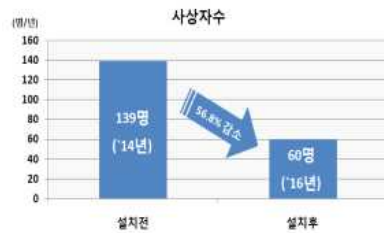
\*교차로 중앙에 원형교통섬을 두고 자동차가 교통섬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여 통행

○ 이는 행정안전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15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완료된 88개소를 대상으로 개선 전·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다.

○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사업시행 전인 2014년에는 139명(사망2, 부상137)이었으나, 시행 후 2016년에는 60명(부상)으로 56.8% 감소하였고 특히, 사망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림 1 참고>

○ 사고 건수는 설치 전 91건에서 설치 후 45건으로 50.5% 줄어 교통

사고 감소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참고>



<그림 1 : 사상자 감소 효과>



<그림 2 : 교통사고 감소 효과>

- **통행시간 감소 측면**에서는 2015년에 완료된 7개소에 대해 분석한 결과, 설치 전 교차로 **평균 통행시간**은 24.9초였으나 설치 후는 21초로 15.7%(3.9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추진하였고 지난해까지 전국에 484개소를 설치하였다.

- 전체 교통사고의 절반 가까이 교차로에서 발생\*한 현실을 감안하여 올해에도 14개소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 전체 교통사고 대비 교차로사고 발생건수 : 2016년 기준 44.9% 발생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효과와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월 27~28일 충남 천안시 소재 상록리조트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회전교차로 업무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를 통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관리 등 **교통안전 분야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회전교차로는 **통행요령 숙지**와 함께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가 중요하다.”라며, “교통사고와 통행시간 감소효과가 검증된 **회전교차로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 1 회전교차로 주요 설치 사례

### □ 주요 설치 사례를 보면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당산나무오거리 점멸신호교차로는 보행량이 많은 교차로임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보호 및 속도 저감 시설이 부족하여
  - 2014년 8건의 교통사고로 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나 회전교차로 설치 후인 2016년에는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개선 전)



(개선 후)

-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 비신호교차로는 통행 우선권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운전불이행, 직진우회전방해 등으로
  - 2014년에 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회전교차로 설치 후인 2016년에는 2건으로 감소하였고
  - 사상자의 경우에는 12명(부상)에서 2명(부상)으로 감소하였다.



(개선 전)



(개선 후)

-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교 앞 점멸 신호 교차로는 통행 우선권이 명확하지 않고

차량 접근로에 속도 저감 시설이 부족하여

- 2014년에 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회전교차로 설치 후인 2016년에는 2건으로 감소하였고
- 사상자의 경우에는 11명(부상)에서 5명(부상)으로 감소하였다.



(개선 전)



(개선 후)

- 울산광역시 울산대학병원 앞 교차로는 비신호교차로로 통행우선권이 명확하지 않고 접근로의 속도 저감 시설이 부족하여
  - 2014년 4건의 교통사고로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나 회전교차로 설치 후인 2016년에는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개선 전)



(개선 후)

### 1. 회전교차로란 무엇인가?

- 회전교차로는 1970년대 초반 영국에서 기존 로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운영효율의 저하, 높은 사고율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하구조 설계방법 및 운영방식을 전환하여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이후, 전 유럽과 미국, 캐나다, 호주까지 도입하기 시작하였음
-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내부 중앙에 원형의 교통섬을 두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원형의 중앙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주행하는 형태로 통행 우선권이 교차로 내 회전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에게 부여한 교차로임

### 2. 회전교차로 설치 지역 및 설치 조건?

- 교통량이 적은 신호교차로에서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이 길어 신호 통제의 실효성이 낮은 교차로
- 비신호교차로의 경우 통행우선권이 명확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가 회전교차로 설치 대상임
- 회전교차로 설치 조건은 소형의 경우 교차로 전체 통과 교통량이 1일 12,000대 미만, 1차로형은 20,000대 미만, 2차로형 32,000대 미만인 지역에 설치가 가능함

### 3. 현재 회전교차로는 몇 개소 정도 설치되었는지? 앞으로 계획은?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까지 484개소가 설치되었으며
- 2018년에는 14개소를 설치하는 등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설치할 계획임

### 4. 해외의 경우 회전교차로가 얼마나 설치되고 있는지?

- 영국의 경우 18,000여개소, 프랑스는 30,000여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계속 확대 설치하고 있는 추세임
- 호주 역시 2,000여개소의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미국은 인디아 주 카멜지역 인구 약 8만의 작은 도시에 80여개의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

### 5. 회전교차로 설치 후 사고가 감소한 원인은 무엇인지?

- 회전교차로 설치 후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볼수 있음
- 첫 번째, 도로 기하구조 변경으로 교차로 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충횡수를 줄임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춤
- 두 번째, 회전교차로 진입부 및 교차로 내에서 감속운행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춤

### 6. 회전교차로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량이 우선입니다.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 교차로 내 회전차량에게 양보를 하여야 하고, 회전차량이 지나간 후 회전차로에 진입해야 합니다.

## 2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 3월말까지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 행정서류 중복제출, 과도한 행정벌칙 등을 국민생각함·국민신문고 등에 접수 -

- 불필요한 행정서류 중복제출, 단순 위반에 대한 과도한 벌칙 등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국민 아이디어가 모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6일부터 3월말까지 받아 국민이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콜110,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제도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있는데, 보다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을 준비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고 획일적인 제도, 공급자 위주의 불합리한 행정절차 등으로 불편을 겪었던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 < 공모 대상 >

- ▲ 인·허가 등 행정절차 시 불필요한 서류의 중복 제출 부담 완화
- ▲ IT 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편의 증진
- ▲ 각종 복지서비스의 신청·이용 관련 불편 해소
- ▲ 국민 개개인에 대한 실생활 관련 주요 정보의 통지 확대
- ▲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정 정비
- ▲ 단순 위반사항에 대한 과도한 과태료·벌칙 부과 규정 완화 등

- 온라인·모바일의 경우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국민신문고 공모제안(www.epeople.go.kr)을, 오프라인에서는 우편 등을 통해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 개선 필요성이 큰 우수 과제를 제안한 참여자에게는 심사를 통해 소정의 상품(기프트콘)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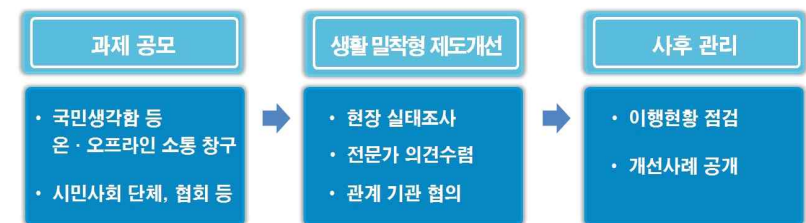
이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일선 현장과 시민사회 단체, 관련 협회 등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다양한 경로로 제안된 국민들의 아이디어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국민들이 정책 참여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사례는 국민생각함, 국민신문고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국민고충과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를 매년 발굴해 개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0개 과제에 대해 240개의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소관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 < 추진 체계도 >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금년도의 최우선 국정 목표인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과제 발굴을 포함한 제도개선의 전 과정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소한 제도개선 아이디어가 모여서 전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큰 변화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 3 중소벤처기업부

#### 중기부, 전통시장 화재안전 제품·기술 전시회 개최

- 누전차단기술, 초기화재 진압기술 활용 가능성 점검 -

- ◇ 화재예방 안전분야 보강을 최우선으로 전통시장 정책 추진
- ◇ 안전기술분야 유망 업체 발굴해 패키지방식으로 집중육성

□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장관은 3.7일(水)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기술분야 유망 제품·기술 전시회\*를 방문해 누전차단기술, 초기화재 진압기술 등 활용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2018. 3.6(화)~3.8(목), 정부대전청사 B1홀

□ 이번 전시회는 그간 정부가 전통시장을 적극 지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화재를 걱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통시장의 근본적인 화재 예방·대처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시장화재의 주된 원인이 되는 노후전선 교체 등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나, 이는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 특정시장 1곳(대전중앙시장)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누전차단기를 전수점검 진행 중, 금년 중 100여개 시장 노후전선 교체, 3년간 300여개 시장 노후전선 교체 추진

- 이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의 근본원인을 점검하고, 최소비용으로 우선 시급한 것부터 시행하고 화재안전 기술을 효과적으로 시장에 활용하기 위한 취지이다.

□ 금번 전시회는 화재안전 제품을 생산하거나 기술 등을 보유한 유망 중소벤처 21곳\*이 참여하였다.

\* 화재안전분야 요소기술(시스템, 감지, 소화, 누전차단 등)을 보유 업체 : <참고2>

| 분야  | 시스템 | 감지 | 소화 | 누전차단,예방 | 계  |
|-----|-----|----|----|---------|----|
| 업체수 | 6   | 7  | 6  | 2       | 21 |

○ 시장상인회, 소방안전협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방안전분야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전통시장 화재안전 설비 등에 채택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아울러, 해당업체들에 대해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각종 지원사업 및 판로 연계, VC투자 의향 검토 등 상담도 함께 이루어졌다.

\* 기술보증, 판로, VC/엑셀러레이터, 전기, 소방안전분야 전문가 참여

□ 금번 전시회에 참가한 주요업체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 분야   | 업체명        | 제품 특징                           |
|------|------------|---------------------------------|
| 시스템  | 지엔에스엠(주)   | 누전, 아크(스파크), 과전류 등 감지 및 전력차단    |
|      | (주)로제타텍    | 무선 복합형 화재감지-통보 시스템 구축으로 특허      |
|      | LDT        | 복합감지(불꽃, 연기, 차동, 정온식)를 통한 화원 감지 |
| 감지   | (주)아이알티코리아 | WI-FI 기반 정보 송수신 가능한 불꽃감지기       |
|      | 원택정보(주)    | 블루투스 기반 화재감지, 감지기 상태 모니터링 가능    |
|      | JS통신건설     | 불꽃감지 듀얼센서 장착해 실상, 열상, 합성영상 제공   |
| 소화   | (주)GFI     | 초미세캡슐에 내장된 소화물질로 화재 자동감지 진압     |
|      | 상원엔지니어링    | 무전원 기계동작방식, 별도전원 없이 소화기능 작동     |
|      | 파이어킵       | 경량화 및 열감응방식 소화장치                |
| 누전차단 | 아콘텍        | 아크, 스파크 검출하여 누전차단 경보 및 전력 차단    |

□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통시장 화재를 근절하기 위해 시장의 자율적인 화재예방 노력과 더불어 정부는 유망 중소 벤처업체가 보유한 화재안전관련 첨단기술을 활용해 근본적으로 화재예방 및 초동 진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1

## 전통시장 화재안전 기술분야 제품·업체 전시회 개요

□ 목적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보강이 필요한 화재 안전분야의 유망한 제품기술 업체 발굴 및 시장창출 지원

□ 전시회 개요

○ (일시) 3.6(화) ~ 3.8(목), \* 장관 방문 : 3.7(수) 14:00~14:40

○ (장소) 정부대전청사 B1홀

○ (참석) 중기부장관, 시장상인회장, 소진공, 소방안전협회, 전통시장 유관기관, 소방안전분야 관계자 등 총 100여명

○ (참여업체) 화재안전 기술력보유 업체(4개분야, 21개, 소진공 엄선)

\* 화재안전관련 4대요소기술(시스템, 감지, 소화, Iot 등) 제품 중소벤처기업 (누전차단기, 화재알림기, 나노캡슐 등 소화장비, LED 관련 등) : <참고2>

| 분야  | 시스템 | 감지 | 소화 | 누전차단,예방 | 계  |
|-----|-----|----|----|---------|----|
| 업체수 | 6   | 7  | 6  | 2       | 21 |

□ 주요내용

○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련 유망업체 제품 전시, 시연

\* 분야별 유망업체, 제품 부스 설치(21개) 및 시연(10개 내외)

○ 상담, 판로 및 투자연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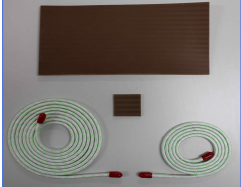
- 지원사업 연계 등 현장 상담, 판로연계, VC투자 의향 검토 등

□ 기대효과

○ 산업적 관점에서 초기시장 창출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안전 관련 유망 중소·벤처업체 발굴하여 패키지방식으로 집중 육성 기대

## 참고2 전시회 참여업체 개요

### ① (주)GFI

|          |                                                                                                                                |                                                                                    |
|----------|--------------------------------------------------------------------------------------------------------------------------------|------------------------------------------------------------------------------------|
| 업체<br>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체명 : (주)GFI</li> <li>대표자명 : 이상섭</li> <li>생산품 : 자동화재감지 소화장치</li> </ul>                  |  |
| 제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기 화재를 원천 차단하여 대형화재 확산을 막는 화재예방</li> <li>초미세캡슐에 내장된 소화물질이 화재를 자동감지, 진압하는 기술.</li> </ul> |  |
| 방식       | 분전반 및 전선 등 화재 발생 시, 소화약제 분사                                                                                                    |                                                                                    |

### ② 태산전자

|          |                                                                                                             |                                                                                     |
|----------|-------------------------------------------------------------------------------------------------------------|-------------------------------------------------------------------------------------|
| 업체<br>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체명 : 태산전자</li> <li>대표자명 : 김필영</li> <li>생산품 : 자동화재감지 소화장치</li> </ul> |   |
| 제품       | 말하는 소화기, 분전반 키트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당황하여 대응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손쉬운 소화기 사용법 제시                                       |  |
| 방식       | 소화전함을 열면 소리가 나오고, 소화기는 사용할 때 들면 소리 발생                                                                       |                                                                                     |

### ③ 상원엔지니어링

|          |                                                                                                                |                                                                                      |
|----------|----------------------------------------------------------------------------------------------------------------|--------------------------------------------------------------------------------------|
| 업체<br>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체명 : 상원엔지니어링</li> <li>대표자명 : 정정순</li> <li>생산품 : 자동화재감지 소화장치</li> </ul> |  |
| 제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열감지 튜브를 적용한 자동소화장치</li> <li>무전원기계동작방식을 이용한 조건 상황에서도 동작 가능</li> </ul>    |  |
| 방식       | 분전반 및 전선 등 화재 발생 시, 소화약제 분사                                                                                    |                                                                                      |

## 4 교육부

###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법적 근거 마련 - 교육부,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장애학생도 보다 체계적인 진로교육으로 미래 설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월 26일(월), 특수학교에도 전문적인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진로진학상담’ 교원자격증을 가진 진로전담교사를 특수학교에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 앞으로 특수교육대상자도 전문성을 갖춘 진로전담교사의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특수학교의 진로 및 직업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안 제4조) ]

- 현재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진로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배치하고 있어, 진로분야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확보나 업무의 지속성 담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진로진학상담’ 과목이 표시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배치할 수 있게 되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질 높은 진로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진로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교육대상자도 보다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바탕으로 미래 진로를 설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 “개정 이후 시도교육청 협의를 통해 특수학교 교사 대상 진로전담교사 부전공 자격 연수를 추진하여,

- 시·도교육청에서 '20년 3월부터는 전국 164개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양질의 진로전담교사를 순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 확정 후, 진로전담교사 연수 일정을 고려하여 '20년 3월 시행 예정이다.

【붙임】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4조(진로전담교사) ① <u>중학교 및 고등학교</u> 의 진로전담교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라 담당과목으로 표시(부전공 과목으로 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로 배치하여야 한다. | 제4조(진로전담교사) ① <u>중학교, 고등학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에 따라 중학교·고등학교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u> ----- |
| ② <u>중학교와 고등학교</u> 를 제외한 초·중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보직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 -----<br>② <u>중학교, 고등학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에 따라 중학교·고등학교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u> -----    |
| ③·④ (생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효과 톡톡

-과기정통부, 2017년 수혜기업 547개사 성과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6일(화) '2017년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K-Global 프로젝트 \* ) 수혜기업들이 창출한 성과를 발표하였다.

\* 「ICT 창업·벤처 통합·연계 방안」('15.3월)에 따라 ICT 창업·벤처 지원사업을 「K-Global 프로젝트」라는 **단일 브랜드**로 통합 운영 중

- 성과분석은 '17년 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 프로그램인 「K-Global 프로젝트」 참여기업의 경영실적을 전수조사\*하여 이루어졌으며

\* '18. 1. 15 ~ '18. 2. 2, 온라인 조사(전화 병행), 응답률 73% (547개사 응답)

- 산업생태계 기여, 수익모델, 성장 가능성, 독자기술 확보를 판단하기 위해 **일자리수, 매출액, 투자유치액, 특허출원 건수**에 대해서 수혜기업의 '16년과 '17년 실적을 비교하였다.

- 수혜기업들이 창출한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다.

- ① **(일자리수)** 수혜기업(547개)의 '17년 말 기준 재직 임직원수는 5,020명으로 '16년 말 재직 임직원수 3,380명과 비교할 때 총 1,640명, 전년대비 48.5% 증가하였다. 수혜기업의 79%(432개)에서 신규 고용이 생겨 ICT 분야 창업·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② **(매출액)** '17년 매출액은 3,712억원으로 '16년 매출액인 2,886억원과 비교하였을 때 총 826억원, 28.6% 증가하였고 '17년 매출액 중 해외 매출액은 718억원으로 전체의 19.3%를 차지했다.

- ③ **(투자유치)** '17년 한 해 동안 1,423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으며, '16년 실적인 1,114억원과 비교하였을 때 총 309억원, 27.7% 증가하였다. 그간 투자 중심 창업 환경 조성 및 벤처 투자액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업의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④ **(특허)** '17년 한 해 동안 특허출원건수는 1,575건으로 '16년 특허출원 건수인 1,231건과 비교하였을 때 총 344건, 27.9% 증가하여 스타트업들의 독자기술 확보 및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성장단계(창업→성장→해외진출→재도전)별로 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을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한 결과, 일자리 창출·투자유치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발굴하였다.

- **(창업단계)** ICT 분야 혁신적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 단계 스타트업 대상으로 공모전 개최, 시제품 제작, 사업화 등을 지원하여 성공사례를 창출하였다.
- 머신러닝 및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서비스를 개발한 '머니브레인'은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대상을 수상하여 사업성,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벤처캐피털로부터 20억원의 투자유치를 받았다.
- **(성장단계)** 창업 후 성장단계에 진입한 스타트업에게는 민간 액셀러레이터 지원, 연구개발(R&D), 기술담보 융자 등을 지원하여 성공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 2015년 8월 창업하여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실거래가 시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갱노노’는 부동산 앱 사용자수 4위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올해를 빛낸 앱으로 선정되었다.

- **(해외진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에게는 법률, 특허, 회계, 마케팅 분야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과 해외 현지 수요를 반영한 투자설명회(IR) 등을 지원하여 성공한 사례도 눈길을 끈다.

- 모바일앱을 위한 간편 탑재 채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샌드버드코리아’는 해외에서 173억원을 투자받았고, 인도네시아의 고젝, 싱가포르의 전자상거래 앱 캐로셀을 비롯해 150개국에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 **(재도전)** 과거 실패 경험이 있는 재도전 기업 대상으로 멘토링, 제품·서비스 현지화 등을 지원하여 재기 성공사례를 이끌어 냈다.

- 개인 창작자를 위한 배경화면 앱 플랫폼 기업인 ‘오지큐’는 네이버 등으로부터 1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누적 글로벌 다운로드 1억 3천만 건을 돌파했다.

□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ICT 분야 창업·벤처를 집중 지원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 “과기정통부는 ICT 분야 혁신기술을 가진 유망 스타트업이 창업 후 지속 성장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기업 대표 성과사례

◆ ICT 창업·벤처 지원 사업을 창업 → 성장 → 해외진출 → 재도전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대표성과 발굴

| 단계    | 성과                  | 기업명       | 세부 내용                                                                                                                                                    |
|-------|---------------------|-----------|----------------------------------------------------------------------------------------------------------------------------------------------------------|
| 창업    | 사업화 성공              | 머니 브레인    | ·머신러닝 및 자연어처리 AI 기반 챗봇 서비스<br>·챗봇 플랫폼 플레이챗 오픈(17.4), 일자리수(16년:1명→17년:13명)<br>·투자유치 20억(L&S 동훈캐피탈)(17.8) / K-Global스타트업 대상 (17.12)                        |
|       |                     | 센스톤       | ·양방향 동적 키 매칭 알고리즘 기반 보안인증플랫폼<br>·5개국(유럽, 미국, 싱가포르, 중국, 일본) 특허 출원(17.4)<br>·한화손해보험 (17.5), 폴리텍대학 인증시스템 공급 계약 (17.12)                                      |
|       |                     | 위닝 아이     | ·모바일 비접촉 장문(손바닥), 지문 생체인식 사용자인증 기술<br>·금융결제원 바이오인증공동업 서비스 런칭(17.12)<br>·K-Global 스타트업 Security 부문 최우수상 수상(17.10)                                         |
| 성장    | 매출·이용자 증가           | 태글        | ·스타와 팬을 연결하는 SNS ‘피퍼(Peeper)’<br>·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퍼처드 앱 선정(17.8)<br>·빌보드 코리아 파트너 계약 / 20개국 이상 30만 사용자 돌파 (17.12)                                      |
|       |                     | 마인즈랩      | ·음성인식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챗봇<br>·투자유치 40억 (KDB산업은행, KEB하나은행)(17.8)<br>·일자리수(16년:40명→17년:108명)<br>·AI기반 상담시스템(17.9) 및 환자 관리시스템 MOU체결 (17.12)                     |
|       |                     | 호갱 노노     | ·부동산 정보 서비스<br>·투자유치 23억 (OKD 창투 등)(17.4) / 하나은행 제휴(17.9)<br>·부동산앱 사용자수 4위 / 구글 올해를 빛낸 앱 선정 (17.12)                                                      |
| 해외 진출 | 해외 투자 유치 및 해외 판로 개척 | 샌드 버드 코리아 | ·모바일 앱을 위한 간편 탑재 채팅 솔루션<br>·인도네시아 GO JEK 등 153개국 기업 대상 채팅 솔루션 제공 (17.2)<br>·일자리수(16년:16명→17년:25명)<br>·해외 투자유치 173억(샤스타 벤처, 오거스트 캐피탈)(17.12)              |
|       |                     | 울랄라랩      | ·공장 제조과정 데이터 모니터링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윌팩토리<br>·중국 Kevins와 중국시장 유통 및 중국 Joint Venture설립 협약 체결 (*17.10)<br>·일본바바 클라우드(중국), Swiss Smart Factory(유럽) 진출 협약 체결 (17.11) |
|       |                     | 럭스 로보     | ·로봇 제작 및 학습용 모듈 플랫폼 모디(MODI)<br>·영국, 두바이 등 세계 10개국 수출<br>·일자리수(16년말:18명→17년말:32명)<br>·투자유치 40억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카카오 브레인) (17.5)                              |

| 단계  | 성과     | 기업명 | 세부 내용                                                                                                                                    |
|-----|--------|-----|------------------------------------------------------------------------------------------------------------------------------------------|
| 재도전 | 재창업 성공 | 오지큐 | ·소셜 크리에이터를 위한 배경화면 앱 플랫폼<br>·누적 글로벌 다운로드 1억 3천만 기록(17.10)<br>·투자유치 100억(네이버, 센트럴 투자 파트너스, 판도라TV)(17.7~10)                                |
|     |        | 집닥  | ·인테리어 비교견적 중개 플랫폼<br>·일자리수(16년:29명→17년:71명)<br>·월 4,000건 견적 요청, 월 사금금액 70억원, 누적 거래액 500억원 달성(17.8)<br>·투자유치 50억 (알토스벤처스,카카오인베스트 등)(17.8) |

6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영향평가로

## 문화적 도시재생의 밑그림을 지원한다

-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18개 사업 대상 문화영향평가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8년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2017년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개 중에 중심시가지형 18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정부의 각종 계획과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민의 삶의 공간과 질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핵심 평가 대상이 된다.

올해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의 역량을 이에 집중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외의 각 부처, 지자체의 문화영향평가 수요는 별도 조사를 거쳐 추가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평가 규모는 국토부와의 협력을 통해 전년도 5개 시도, 5개에서 전국 12개 시도, 18개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문화적 도시재생 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를 추진한다.

\* 문화영향평가 대상 도시재생뉴딜 지역: 부산(북구), 인천(부평구), 대전(대덕구), 경기(수원, 남양주, 시흥), 강원(강릉), 충북(청주), 충남(천안), 전북(군산, 익산, 정읍), 전남(목포, 순천), 경북(포항, 영천), 경남(김해), 세종(조치원) 등

특히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용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는 각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국토부가 확정하기 전에 평가·컨설팅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 평가와 병행해 컨설팅에도 집중한다. 문화, 관광, 도시,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컨설팅단을 구성해 해당 지역 전문가와 함께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문화재생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과거의 물리적 개발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주민 공동체의 형성, 문화유산의 연계 활용, 수요자 중심공간계획 등 문화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18년 문화영향평가 대상 도시재생뉴딜사업 현황

(붙임)

## 2018년 문화영향평가 대상 도시재생뉴딜사업 현황

| 연번 | 시도 | 대상지  | 사업명                                    | 사업유형    |
|----|----|------|----------------------------------------|---------|
| 1  | 부산 | 북구   | 구포 이음                                  | 중심 시가지형 |
| 2  | 인천 | 부평구  |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 중심 시가지형 |
| 3  | 대전 | 대덕구  | 지역활성화의 새여울을 여는 신탄진 상권활력 UP             | 중심 시가지형 |
| 4  | 세종 | 조치원  | 지역과 함께하는 스마트재생, 청춘조치원 Ver. 2           | 중심 시가지형 |
| 5  | 경기 | 수원시  | 수원시 도시재생, 125만 수원의 관문으로 통하다            | 중심 시가지형 |
| 6  |    | 남양주시 | SLOW & SMART CITY, 남양주 원도심 역사문화재생      | 중심 시가지형 |
| 7  |    | 시흥시  |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안전도시                        | 중심 시가지형 |
| 8  | 강원 | 강릉시  | 올림픽의 도시, KTX시대 옥천동의 재도약                | 중심 시가지형 |
| 9  | 충북 | 청주시  | 젊음을 공유하는 길, 경제를 공유하는 길 우암동             | 중심 시가지형 |
| 10 | 충남 | 천안시  | 新경제교통 중심의 스마트복합거점공간 천안역세권              | 중심 시가지형 |
| 11 | 전북 | 군산시  | 다시열린'군산의 물길'그리고 '깨보선창으로 밀려오는 3개의 큰 물결' | 중심 시가지형 |
| 12 |    | 익산시  | 역사가(驛史街) 문화로(文化路)                      | 중심 시가지형 |
| 13 |    | 정읍시  | 지역특화산업(떡·차·면·술)으로 살리는 시민경제도시 정읍!       | 중심 시가지형 |
| 14 | 전남 | 목포시  | 1897개항문화거리                             | 중심 시가지형 |
| 15 |    | 순천시  | 몽미락(夢味樂)이 있는 청사뜰                       | 중심 시가지형 |
| 16 | 경북 | 영천시  | 사람, 별, 말이 어울리는 영천대말                    | 중심 시가지형 |
| 17 |    | 포항시  | 새로운 시작! 함께 채워가는 미래도시 포항                | 중심 시가지형 |
| 18 | 경남 | 김해시  | 포용과 화합의 무게                             | 중심 시가지형 |

## 농업 농촌의 희망, 청소년 미래농업을 배우다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금년도 “미래농업선도고 열린강좌” 3회 운영 -

### 《 주 요 내 용 》

◆ 미래 농업 농촌을 이끌어 갈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 인재양성 및 농업마인드 고취를 위해 미래농업선도고 열린강좌 프로그램 운영( '18. 3회)

○ 일자·장소 : '18. 3. 6.(나주), 3. 20.~3. 21.(보은·홍천)

○ 교육대상 : 미래농업선도고\* 신입생 180여명(학교당 60·80여명)

\* 미래농업선도고 현황 : 호남원예고(나주), 충북생명산업고(보은), 홍천농업고(홍천)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서해동)은 미래의 우리 농업 농촌을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 인재양성 및 농업마인드 고취를 위해 미래선도 농업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미래농업선도고 열린강좌」를 운영한다.

○ 미래농업선도고 열린강좌는 2017년도 신규로 개설하여 1회(1개 학교 55명) 운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회로 확대하여 1회차에는 나주시 금천면에 위치한 호남원예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60여명을 대상으로 3월 6일(화) 하루 동안 운영되며, 2·3회차는 3.20~21일 2일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미래농업선도고교로 지정된 2개 학교(120여명)를 직접 찾아가서 운영하게 된다.

□ 금년도에 운영하는 미래농업선도고 열린강좌는

○ 농업 농촌에서 청년농업인의 역할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의

청소년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으며,

- 지역사회 성공 청년농업인(3인) 특강시간을 편성하여 미래의 농업분야에 대한 진로직업을 탐색해 보고, 마인드업 학습을 통해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 특히, 팀별로 참여하는 마인드업 학습을 통해 앞으로의 직업에 대한 목표와 동기부여를 갖게 하고, 가치관 및 자기 이해로 고교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관계자는

- 이번 「미래농업선도고 열린강좌」를 통해 농업전문교육기관으로서 수요자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미래의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열린교육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주민 친환경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교육기관으로 '18년 총 141과정에 30,095명을 교육대상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농림축산식품 관련 공무원과 관련기관 관계자 및 일부 소비자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책 중심의 교육을 담당

※ 미래농업선도고교 : 첨단과학 영농기술을 바탕으로 농업을 선도할 청년 창업농 및 후계영농인력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지원하고 육성하는 학교이다

## 참고1 미래농업선도고 열린강좌 과정 개요

### □ 교육 목표

- 미래농업선도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농업마인드 함양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청년농업인으로서의 비전설정 및 자신감 고취

### □ 교육 일시 : 2018. 3. 6.(나주), 3. 20.(보은), 3. 21.(홍천)

### □ 교육 대상 : 미래농업선도고\* 신입생 180여명(학교당 60여명)

\* 미래농업선도고 현황: 호남원예고(나주), 충북생명산업고(보은), 홍천농업고(홍천)

### □ 주요 교육내용

- 지역사회 성공 청년농업인 특강을 개설하여 농업마인드 함양
- 동기부여, 자기이해, 자존감 향상을 위한 마인드 수업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자기 이해를 통한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마련

### □ 과정 연혁

- 2017년 신규 개설 : 교육실적 1회 55명

### □ 교육 시간표

| 월/일 |                 | 3. 6(나주) / 3.20(보은) / 3.21(홍천)          |
|-----|-----------------|-----------------------------------------|
| 교시  | 시간              | 교육장소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및 미래농업선도고              |
| 1   | 10:00<br>~10:50 | 원장님 환영 인사(10:00~10:10)(나주)              |
| 2   | 11:00<br>~11:50 |                                         |
|     |                 | 성공 청년농업인 특강                             |
|     | 12:00~13:00     | 점심식사                                    |
| 3   | 13:00<br>~13:50 | 동기부여, 자기이해, 자존감 향상을 위한 마인드 수업<br>(팀 수업) |
| 4   | 14:00<br>~14:50 |                                         |
| 5   | 15:00<br>~15:50 |                                         |
| 6   | 16:00<br>~16:50 |                                         |

1. 동기부여 프로그램(길은 왜 만드는가?)
2. 자기이해 프로그램(20문20답, 영화인문학)
3.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자존감 카드만들기)
4. 목표 설정 프로그램(인생의 Map 만들기)

## 참고2 2017년 미래농업선도고교 열린강좌 사진



## 자연공원 내 대피소에서 음주 못한다

-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에서 음주 근절 및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 늘린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의결에 따라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3월 13일부터 금지되며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 2017년 12월 12일,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음주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됨
- 또한, 외래 동물을 놓아주는 것을 막는 기존 금지 행위에 외래 식물을 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도 추가되며,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도 마련되었다.
  - \*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 원
- 이번 개정안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정수가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되는 한편, 회의 구성 시 위원장이 안전별로 해당 심의안전과 관련된 정부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갈등해결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민간위원 선정 기준은 환경·생태·경관·산림·해양·문화·휴양·안전 등의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박사 학위 취득자 중에 환경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다.
-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공원시설 설치 등을 위해 공원계획 결정·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공원계획 요구서'에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원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 공원관리청이 실시하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항목에 '소음 및 빛공해 영향 분석'과 '경관영향 분석'을 추가하여 새로운 유형의 자연환경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 사고가 줄어들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체계적 자연공원 보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http://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자연공원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2. 질의응답. 끝.

□ 국립공원위원회 구성·운영 개선(제5조 및 제6조)

○ 위원회 구성의 민간참여 강화(제5조)

- 민간참여 확대를 위하여 위원회 정수를 확대(정수 : 23→25명, 위촉 민간위원 : 11→13명)하고 위원회 구성 기준을 구체화\*

\* (민간위원 기준) 환경·생태·경관·산림·해양·문화·휴양·안전 관련학과 교수 또는 해당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등 자연보전·지속가능 이용에 대한 지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정부위원 의결권 조정 및 운영상 갈등해결 기능 강화(제6조)

- 국립공원위원회 회의 구성시 위원장이 안전별로 해당 심의 안전과 관련된 정부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
- 지역주민 및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절차 규정

□ 자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신설(제25조)

- 대피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토록 자연공원법이 개정(17.12.12)됨에 따라, 대피소 및 탐방로와 산 정상 지점 등 공원관리청이 공고하는 지역에서는 음주를 금지함
- 자연공원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현행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 외에 '임야에 외래식물을 식재하는 행위'를 추가

□ 음주행위 및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3 제2호)

-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장소에서 음주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1차 위반 5만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원)
-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원)

□ 기타 제도 개선

○ 공원계획 요구서 내용 추가(제10조제4호)

- 공원계획 변경 요청 등을 위해 제출하는 공원계획 요구서 내용에 현행 '사업비의 규모' 외에 '재원조달계획' 추가

○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항목 추가(제13조)

-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 결정·변경시 실시하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항목에 소음·빛공해 발생 및 경관 영향을 추가

### 1. 국립공원 내 음주사고 발생 현황?

- ☐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은 최근 6년간(12~17년) 총 64건으로 전체 안전사고(1,328건) 중 약 5%를 차지
-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추락사·심장마비 등)의 경우, 총 10건이 발생하여 전체 사망사고(90건)의 약 11%를 차지

### 2. 음주행위를 금지할 대상지역은 어떤 곳인지?

- ☐ 대피소 외 탐방로, 산 정상 지점 등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들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평탄하고 넓은 탐방로 주변, 산 정상 지점을 중심으로 음주행위가 빈번하여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 ※ (탐방로, 산 정상 지점 등 음주사고 발생사례) △북한산 대남문 정상 인근 특성상 전망이 좋고 평탄한 곳이 많아 음주행위 빈번, 이로 인한 호흡 곤란자 발생(17년), △무등산 탐방로 중봉 일원에서 음주 후 등산 중 추락사고로 인면부 부상(13년) 등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것만으로 안전사고 발생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지?

- ☐ 연간 탐방객 수가 약 4천5백만명 수준이고, 면적만 해도 3,972km<sup>2</sup>에 달하는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음주행위를 전면적으로 단속하고 그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단기간 내 억제하기는 어렵겠으나,
- 탐방로, 산 정상 지점 등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적극 홍보·단속한다
- 음주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의식 전환과 함께 탐방객들이 자발적

파수꾼\*이 되어 예방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 (국립공원공단에 음주행위 단속요청 민원 지속) △대피소 내 음주 소란 조치 요청 지속(11~17년), △산 정상부 음주행위 근절 요청(소백산), △탐방로 등반 중 음주자 부상 예방 촉구(북한산), △단체 등산객 음주행위 주의 요청(월출산) 등

### 4. 국립공원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무엇이며,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

- 국립공원위원회는 자연공원기본계획 수립, 국립공원 지정·해제, 국립공원계획의 결정·변경, 일정 규모 이상의 행위허가 등 국립공원 관리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임
-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위원장 및 기재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
- ※ (현행) 위원장 포함 정부위원 10명, 민간 당연직 위원 2명(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계종 사회부장), 민간 위촉위원 11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

### 5. 이번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위원회 구성·운영은 위원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 기존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정수(23명)가 25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민간 위촉위원이 11명에서 13명으로 증가하여 위원회 심의 시 민간의 역할 강화
- 한편, 국립공원위원회 회의 구성시 위원장이 안전별로 해당 심의 안전과 관련된 정부위원을 지명토록 규정
- 이를 통해 국립공원위원회에서의 민간 참여를 강화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원관리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위원회 운영상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갈등 해소 기능도 강화

## “출산·육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은 국가의 책무”

- 韓·獨 노동부 장관 여성고용문제 해결 위해 머리를 맞대다 -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3.7.(수) 독일의 Katarina Barley 연방여성가족부 장관이자 노동사회부장관 직무대리를 만났다.
- 김영주 장관은 한국 정부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확대하고 여성노동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특히, 문재인 정부는 장관급의 30%를 여성으로 임명하고, 고위직 여성비율을 공무원은 10%, 공공기관은 20%까지 높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독일 Katarina Barley 장관 역시 직장 내 남녀차별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유리 천장을 깨기 위한 독일의 ‘시간제 고위직 정책’을 소개하였다.
  - 김영주 장관은 고위직들이 시간제 근로의 장점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면 현장에서 결코 정착될 수 없을 것이라고 공감하며,
    - 시간제 고위직 확산이 여성의 고위직 진출과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 유리천장 지수(‘17, 이코노미스트지) : OECD 29개국 중 29위(5년 연속 최하위) (관리직) 한국 10.5%, 스웨덴 39.8%, 미국 43.4%, 영국 35.4%, OECD평균 37.1%
- \* ‘16년 기준 여성임원비율: 한국 2.1%, 독일 20.1%, 프랑스 33.5%
- \* (시간제 고위직 민간사례) 독일 자동차기업 벤츠는 시간제 관리자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전일제의 60% 시간 동안 일하는 두 명의 시간제 관리자를 채용, 업무 교대 시 관리자들과 만나 기존에 진행된 업무상황 공유토록 제도화

- 또한, Barley 장관은 시간제 근로자가 주로 여성에 치우쳐 발생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자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파트너십 보너스제”를 도입하였다고 소개하였다.
  - 파트너십 보너스제를 사용하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정부가 추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김영주 장관은 “우리나라 기혼 여성 2명 중 한명 꼴(‘16년 48.6%)로 경력 단절을 경험하며, 한번 경력이 단절되면, 남녀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여성은 비정규직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자가 출산·육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조성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해 한국은 작년 말 ‘여성 일자리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하여 최근 남성육아휴직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 \* 남성 육아휴직: (‘13) 2,293명(3.3%)→ (‘15) 4,872명(5.6%)→ (‘17) 12,043명(13.4%)
  -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맘 놓고 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대담 후 독일 Barley 장관은 직접 김영주 장관에게 시간제 고위직 사무실을 안내하고 독일의 시간제 고위직 운영 현황을 함께 시찰하였다.

- 양국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협조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 아울러 두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노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앞으로 실무적으로 더욱 **진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 한편, 같은날 오후 김영주 장관은 독일의 직업훈련제도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독일연방상공회의소(DIHK: Deutscher Industrie-und Handelskammertag)** 또한 방문, 4차 산업혁명에 대응·선도하기 위한 **직업훈련 전략을 논의하였다.**
- 독일은 백년 넘게 성공적으로 발전시켜온 직업훈련시스템을 유지하고 정부, 기업과 사회적 파트너(노조)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 독일의 상공회의소 DIHK

- 79개 지역 상공회의소(IHK)와 본부조직인 ‘독일연방상공회의소’ (DIHK: Deutscher Industrie-und Handelskammertag)로 구성
- 지역 상공회의소는 훈련제도의 주도적 역할\* 수행, 본부인 독일 상공회의소는 정책자문, 법개정 참여, 여건 조성 등 실시

\* 양성·향상훈련 시행, 훈련표준 수립, 검증시험 실시 및 자격부여, 훈련 품질관리 등 인력양성 관련 사업·제도 운영

- 이 날 김영주 장관의 독일연방상공회의소 방문을 계기로 폴리텍과 독일연방상공회의소 및 한독상공회의소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업훈련시스템 상호교류·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 앞으로 직업교육훈련분야 협력은 프로젝트 추진, 직업훈련시스템 관련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히 프로

젝트 진행을 위하여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인력양성을 위해 폴리텍의 교과과정 개편** 등 혁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 산업계 중심 인력양성의 역량을 갖춘 독일연방상공회의소와 협력을 계기로 폴리텍 혁신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김영주 장관은 “**사람·노동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양국의 공통 관심사이자 주요 과제임을 언급하며
- **직업능력개발분야에 대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검증된 독일 훈련시스템의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1. 현황

- (구성) 79개 지역 상공회의소(IHK)와 본부조직인 '독일 연방상공회의소' (DIHK: Deutscher IHK)로 구성
  - 상공회의소는 독일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모든 기업(수공업기업, 농업기업 제외)이 의무 가입하는 공법상의 법인
- (주요기능) 기업 해외 진출, 사업주 이해 대변 등 일반적 기능과 함께, 독일 인력양성 전통에 기반하여 **직업훈련의 주도적 역할 수행**
  - 독일연방상공회의소(DIHK)는 훈련에 관한 정책을 자문하고, 기업과 청소년을 위한 훈련 여건 조성, 법률 개정 등에 참여
  - 지역 상공회의소(IHK)에서 시설·장비 등 훈련 인프라를 갖추고 실질적인 훈련 사업 수행

## 2. 특징

- 직업훈련 제도의 주도적 역할 수행
  - 양성·향상훈련 시행, 훈련표준 수립, 검증시험 실시 및 자격부여, 훈련 품질관리 등 인력양성 관련 사업·제도 운영
- 독일의 인력양성 전통에 따라 자발적으로 훈련과정에 참여
  - 중세시대 수공업 길드 문화에 기반하여 인력양성을 상공회의소 등 사업주 단체의 본연의 책무로 인식, 자율적·적극적으로 참여
  - \* 독일은 12세기부터 도제교육 방식에 따라 현장에서 각 기업이 직접 숙련인력을 양성, 19세기부터는 자체적으로 직업표준을 설정하고 엔지니어들이 훈련교사 역할을 수행
- 개별 기업보다는 사업주 단체 중심으로 직업훈련 실시
  - 수공업 기업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숙련기술 중심으로 훈련을 설계·운영, 특정기업이 아닌 사업주 단체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

## 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방식 개선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을 국회 본회의 통과 -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해서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대상 선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이 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 법률에는 제도 명칭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lt;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주요 개정 내용 &gt;

- 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제명 등)
  -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소관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해서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 이번 법률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정책도 포함하게 되어 보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환경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등 다른 정부평가제도와 같이 제도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여 국민과 실무자 등이 보다 수월하게 제도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증진과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양성평등 정책 실천을 위해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18부, 2청)를 수립·발표\*한 바 있으며,

- 목표 실현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정부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붙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u>성별영향분석평가법</u>                                                                                                                              | <u>성별영향평가법</u>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u>성별영향분석평가</u> 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u>성평등</u> 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u>성별영향평가</u>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1. “ <u>성별영향분석평가</u> ”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u>성평등</u> 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u>성평등</u> 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1. “ <u>성별영향평가</u> ”----- <u>평가</u> ----- |
| 2. 3. (생략)                                                                                                                                    | 2. 3. (현행과 같음)                            |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략)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성별영향분석평가</u> (이하 “ <u>분석평가</u> ”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 <u>성별영향평가</u> 의-----              |

| 현행                                                                                                                                                                                                                                                                                                                                                                                                                                                               | 개정안                                                                                                                                                                                                                                                                                                                                                                                                                                                                                      |
|------------------------------------------------------------------------------------------------------------------------------------------------------------------------------------------------------------------------------------------------------------------------------------------------------------------------------------------------------------------------------------------------------------------------------------------------------------------|------------------------------------------------------------------------------------------------------------------------------------------------------------------------------------------------------------------------------------------------------------------------------------------------------------------------------------------------------------------------------------------------------------------------------------------------------------------------------------------|
|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분석평가</u>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분석평가</u>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b>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b></p> <p>제5조(<u>분석평가</u>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u>분석평가</u>를 실시한다. &lt;후단 신설&gt;</p> <p>② (생략)</p> <p>제6조(<u>분석평가</u>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p> | <p>③ -----<u>성별영향평가</u>-----</p> <p>-----</p> <p>-----</p> <p>-----</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성별영향평가</u>-----</p> <p>-----</p> <p>-----</p> <p>-----</p> <p><b>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b></p> <p>제5조(<u>성별영향평가</u> 대상) ① ---</p> <p>-----</p> <p>-----</p> <p>-----</p> <p>-----</p> <p>-----</p> <p>-----<u>성별영향평가</u>-----</p> <p>----.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u>성별영향평가</u>를 실시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u>성별영향평가</u>의 고려사항)</p> <p>-----</p> |

| 현행                                                                                                                                                                                                                                                                                                                                                                                                                                                                                                                                     | 개정안                                                                                                                                                                                                                                                                                                                                                                                                                                                                                                                   |
|----------------------------------------------------------------------------------------------------------------------------------------------------------------------------------------------------------------------------------------------------------------------------------------------------------------------------------------------------------------------------------------------------------------------------------------------------------------------------------------------------------------------------------------|-----------------------------------------------------------------------------------------------------------------------------------------------------------------------------------------------------------------------------------------------------------------------------------------------------------------------------------------------------------------------------------------------------------------------------------------------------------------------------------------------------------------------|
| <p>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u>분석평가</u>를 하고 <u>분석평가서</u>를 작성하여야 한다.</p> <p>1. 2. (생략)</p> <p>3. <u>분석평가결과</u>에 따른 정책개선방안</p> <p>4. 그 밖에 <u>분석평가</u>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제7조(<u>분석평가</u>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u>분석평가</u>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p> <p>제8조(<u>분석평가서</u>의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분석평가</u>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분석평가서</u>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u>분석평가서</u>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p> | <p>-----</p> <p>-----<u>성별영향평가</u>-----</p> <p><u>성별영향평가서</u>-----.</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성별영향평가결과</u>-----</p> <p>-----</p> <p>4. -----<u>성별영향평가</u>-----</p> <p>-----</p> <p>제7조(<u>성별영향평가</u>의 시기) ----</p> <p>-----</p> <p>-----</p> <p>-----<u>성별영향평가</u>-----.</p> <p>-----</p> <p>-----</p> <p>제8조(<u>성별영향평가서</u>의 작성 등)</p> <p>① -----</p> <p>-----<u>성별영향평가</u>-----</p> <p>-----</p> <p>-----<u>성별영향평가서</u>-----</p> <p>-----.</p> <p>② -----</p> <p>-----<u>성별영향평가서</u>-----</p> <p>-----</p> |

| 현행                                                                                                                                                                                                                                                                                                                                                                                                                                                                                                          | 개정안                                                                                                                                                                                                                                                                                                                                                                                     |
|-------------------------------------------------------------------------------------------------------------------------------------------------------------------------------------------------------------------------------------------------------------------------------------------------------------------------------------------------------------------------------------------------------------------------------------------------------------------------------------------------------------|-----------------------------------------------------------------------------------------------------------------------------------------------------------------------------------------------------------------------------------------------------------------------------------------------------------------------------------------------------------------------------------------|
| <p>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u>분석평가서</u>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p> <p>제9조(<u>분석평가결과의 반영</u>)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분석평가</u>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분석평가</u>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10조(<u>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u>)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u>분석평가</u>를 실시할 수 있다.</p> | <p>-----</p> <p>-----</p> <p>-----</p> <p>-----</p> <p>-----</p> <p>-----</p> <p>③ -----</p> <p><u>성별영향평가서</u></p> <p>-----</p> <p>-----</p> <p>-----</p> <p>제9조(<u>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u>) ① -----</p> <p>-----<u>성별영향평가</u></p> <p>-----</p> <p>-----</p> <p>② -----<u>성별영향평가</u></p> <p>-----</p> <p>-----</p> <p>제10조(<u>특정성별영향평가</u>) ① -----</p> <p>-----<u>성별영향평가</u></p> <p>-----</p> |

| 현행                                                                                                                                                                                                                                                                                                                                                                                                                                                                                                                                  | 개정안                                                                                                                                                                                                                                                                                                                                                       |
|-------------------------------------------------------------------------------------------------------------------------------------------------------------------------------------------------------------------------------------------------------------------------------------------------------------------------------------------------------------------------------------------------------------------------------------------------------------------------------------------------------------------------------------|-----------------------------------------------------------------------------------------------------------------------------------------------------------------------------------------------------------------------------------------------------------------------------------------------------------------------------------------------------------|
| <p>1. ~ 3. (생략)</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분석평가</u>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u>분석평가</u>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u>분석평가</u>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u>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u>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u>분석평가</u>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의2(<u>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u>)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u>분석</u></p> |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u>성별영향평가</u>-----</p> <p>-----</p> <p>-----<u>성별영향평가</u>-----</p> <p>-----</p> <p>-----<u>성별영향평가</u>-----</p> <p>-----</p> <p>③ -----<u>특정성별영향평가</u>-----</p> <p>-----</p> <p>-----</p> <p>④ -----<u>성별영향평가</u></p> <p>-----</p> <p>-----</p> <p>제10조의2(<u>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u>) ① -----</p> <p>-----<u>성별영향평가</u></p> |

| 현행                                                                                                                                                                                                                                                                                                                                                                                                                                                                                                             | 개정안                                                                                                                                                                                                                                                                                                                                                                        |
|----------------------------------------------------------------------------------------------------------------------------------------------------------------------------------------------------------------------------------------------------------------------------------------------------------------------------------------------------------------------------------------------------------------------------------------------------------------------------------------------------------------|----------------------------------------------------------------------------------------------------------------------------------------------------------------------------------------------------------------------------------------------------------------------------------------------------------------------------------------------------------------------------|
| <p>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u>분석평가</u>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u>분석평가</u>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u>분석평가</u>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11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u>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u>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책, 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p> | <p>가-----.</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u>성별영향평가</u>-----<br/>-----<u>성별영향평가</u>-----<br/>-----<br/>-----<br/>-----.</p> <p>③ -----<u>성별영향평가</u>-----<br/>-----<br/>-----<br/>-----.</p> <p>제11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u>특정성별영향평가</u>-----<br/>-----<br/>-----<br/>-----<br/>-----<br/>-----<br/>-----.</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p> |

| 현행                                                                                                                                                                                                                                                                                                                                                                                                                                                                                                                         | 개정안                                                                                                                                                                                                                                                                                                                                                                                                                                                                      |
|----------------------------------------------------------------------------------------------------------------------------------------------------------------------------------------------------------------------------------------------------------------------------------------------------------------------------------------------------------------------------------------------------------------------------------------------------------------------------------------------------------------------------|--------------------------------------------------------------------------------------------------------------------------------------------------------------------------------------------------------------------------------------------------------------------------------------------------------------------------------------------------------------------------------------------------------------------------------------------------------------------------|
| <p>제출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u>분석평가</u>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종합분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b>제3장 <u>분석평가</u>의 추진 및 지원 체계</b></p> <p>제13조(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u>분석평가</u>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u>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u>(이하 이 조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p>1. <u>분석평가</u>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p> <p>2. <u>분석평가</u>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p> <p>3. <u>분석평가결과</u>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p> | <p>제출 등) ① -----<br/>-----<br/>-----<u>성별영향평가</u>-----<br/>-----<br/>-----<br/>-----<br/>-----.</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3장 <u>성별영향평가</u>의 추진 및 지원 체계</b></p> <p>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u>성별영향평가</u>-----<br/>-----<br/>-----<br/>-----<br/>-----<br/>-----<u>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u>-----<br/>-----<br/>-----.</p> <p>② -----<br/>-----.</p> <p>1. <u>성별영향평가</u>-----<br/>-----</p> <p>2. <u>성별영향평가</u>-----<br/>-----</p> <p>3. <u>성별영향평가결과</u>-----<br/>-----</p> |

| 현행                                                                                                                                                                    | 개정안                                                                                                                                                                             |
|-----------------------------------------------------------------------------------------------------------------------------------------------------------------------|---------------------------------------------------------------------------------------------------------------------------------------------------------------------------------|
| 3의2. <u>분석평가결과</u> 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 3의2. <u>성별영향평가결과</u> -----<br>-----<br>-----<br>---                                                                                                                             |
| 4. <u>분석평가결과</u> 의 공표에 관한 사항                                                                                                                                          | 4. <u>성별영향평가결과</u> -----<br>-----                                                                                                                                               |
| 5. (생략)                                                                                                                                                               | 5. (현행과 같음)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제13조의2( <u>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u> 의 설치 및 기능) ① <u>분석평가</u>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u>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u> (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3조의2( <u>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u> 의 설치 및 기능) ① <u>성별영향평가</u> -----<br>-----<br>-----<br>-----<br><u>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u> -----<br>-----<br>-----.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14조( <u>분석평가책임관</u> 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u>분석평가</u> 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u>분석평가</u> 업무를 총괄하는 <u>분석평가책임관</u> 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14조( <u>성별영향평가책임관</u> 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br>-----<br>-----<br>-----<br><u>성별영향평가</u> -----<br>-----<br><u>성별영향평가</u> -----<br>-----<br><u>성별영향평가책임관</u> -----<br>-----. |
| ② 제1항에 따른 <u>분석평가책임관</u> 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                                                                                                                              | ② ----- <u>성별영향평가책임관</u> -----                                                                                                                                                  |

| 현행                                                                                                              | 개정안                                                                                                                                           |
|-----------------------------------------------------------------------------------------------------------------|-----------------------------------------------------------------------------------------------------------------------------------------------|
| 다.                                                                                                              | -----.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제6조에 따른 <u>분석평가</u> 의 실시 및 <u>분석평가서</u> 의 작성에 관한 사항                                                          | 2. ----- <u>성별영향평가</u> -----<br>----- <u>성별영향평가서</u> -----<br>-----                                                                           |
| 3. 제9조에 따른 <u>분석평가결과</u> 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 3. ----- <u>성별영향평가결과</u> -----<br>-----<br>-----                                                                                              |
| 4. (생략)                                                                                                         | 4. (현행과 같음)                                                                                                                                   |
| 5. 제15조에 따른 <u>분석평가</u> 교육에 관한 사항                                                                               | 5. ----- <u>성별영향평가</u> -----<br>-----                                                                                                         |
| 6. <u>분석평가</u>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u>분석평가</u> 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6. <u>성별영향평가</u> -----<br>-----<br>-----<br>-----<br><u>성별영향평가</u> -----<br>-----<br>-----                                                    |
| ③ 제1항에 따른 <u>분석평가책임관</u> 의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 <u>성별영향평가책임관</u> -----<br>-----<br>-----.                                                                                             |
| 제15조( <u>분석평가</u>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분석평가</u> 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u>분석평가</u>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조( <u>성별영향평가</u> 교육) ① -----<br>-----<br>-----<br>-----<br><u>성별영향평가</u> -----<br>-----<br>-----<br>-----<br><u>성별영향평가</u> -----<br>-----. |
| ② <u>분석평가</u> 교육 대상자의 범                                                                                         | ② <u>성별영향평가</u> -----                                                                                                                         |

| 현행                                                                                                                                                        | 개정안                                                                                                                                                         |
|-----------------------------------------------------------------------------------------------------------------------------------------------------------|-------------------------------------------------------------------------------------------------------------------------------------------------------------|
| 위 및 횡수,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br>-----<br>-----.                                                                                                                                    |
| 제16조(분석평가 자문)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u>분석평가</u> 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6조( <u>성별영향평가</u> 자문) ① --<br>-----<br>-----<br>-----<br>-- <u>성별영향평가</u> -----<br>-----.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17조( <u>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u>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u>분석평가</u> 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u>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u> (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7조( <u>성별영향평가기관</u> ) ① ---<br>-----<br>----- <u>성별영향평가</u> -----<br>가-----<br>-----<br>----- <u>성별영향평가</u> -----<br>기관-----<br>-----.                    |
| 1. ~ 5.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18조( <u>분석평가</u>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u>분석평가</u> 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u>분석평가</u> 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u>분석평가</u>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8조( <u>성별영향평가</u>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① ----- <u>성별영향평가</u> -----<br>----- <u>성별영향평가</u> -----<br>-----<br>-----<br>-- <u>성별영향평가</u> -----<br>-----.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 ② -----                                                                                                                                                     |

| 현행                                                                        | 개정안                                                              |
|---------------------------------------------------------------------------|------------------------------------------------------------------|
| 다른 <u>분석평가</u>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u>분석평가</u> 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 <u>성별영향평가</u> -----<br>----- <u>성별영향평가</u> -----<br>-----.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교통안전종합대책 확산 설명회 ...

### 6일 17개 지자체 대상 실시

- 보행자 중심·지역 주도 정책 확산 위한 역할 강조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월 23일 발표한 **교통안전종합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월 6일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자체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협업**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 참석: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17개 시·도 지자체

- 이번 설명회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72%(‘17년 기준)가 지자체 관할도로(광역시도, 시·군도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라는 점을 알려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독려했고**,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차량 속도 하향** 등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주도의 교통안전 정책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협조 요청했다.

\* 지자체 교통안전 전담인력 및 조직 확보, 지자체 중심 교통안전대책반 운영 등

- 앞으로 국토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교통안전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조실 주제 점검협의회**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법정부 홍보 협의회**를 통해 **전방위적인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지역안전지수, 교통문화지수 등 지자체 평가 지수에서 교통안전관리 부문 강화

## 교통안전종합대책 범정부 합동 지자체 설명회 개최

### □ 회의 개요

- (時/所) ‘18. 3. 6(화) 15시 / 세종청사 6동 443호(대회의실)
- (참석) 종합교통정책관(주재), 교통안전복지과장, 대중교통과, 물류산업과, 택시산업팀, 첨단도로안전과, 행정안전부, 경찰청, 17개 광역지자체 교통안전 담당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 □ 주요 논의사항

#### ○ 교통안전종합대책 공유

- (교통사고 현황 설명) 교통사고 사망자 72%가 지자체 관할도로 사고로 **지자체의 관심 및 인력·재정 부족 문제의 심각성 인지**
- (정책 방향 공유) **보행환경 개선, 차량 속도 하향, 불법 주·정차 및 불법 운행 단속 강화, 교통약자 보호 강화 등 정책 추진 방향 설명**
- (지자체 합동평가 개선) 지역안전지수(행안부), 교통문화지수(국토부), 교통안전지수(경찰청) 등에 **교통안전관리 부문 강화** 계획 설명

#### ○ 지자체 협조사항 당부

- (지자체 참여 독려) 교통사고 원인 분석 및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정밀 합동 조사, 기관간 정보 공유** 등에 지자체 적극 참여 요청
- (현장 이행력 확보) 지자체 교통안전 **전담인력 및 조직 확보**, 지자체 중심 **교통안전대책반 운영** 등 지자체 역할 강화 협조 요청
- (지자체 홍보 강화)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홍보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홍보 채널 활용** 협조 요청

### □ 향후 계획

- **국무조정실 주제 점검협의회**를 통해 지자체 추진상황 지속 점검

## 해수부, 2018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 사업자로 인천시·강원도·전라남도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8년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사업자로 인천시(경인북부수협), 강원도(강릉시수협), 전라남도(장흥스마트팜) 3개소\*\*를 선정하였다.

\* 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 Marketing Center : 산지에서 수산물 매입·위탁, 물량을 집적화하여 전처리·가공 등을 거친 뒤 상품화하거나 대형소비처에 공급하는 거점 센터

\*\* 공모사업 참가자는 각 지자체이며, 경인북부수협 등 지역 생산자 단체에서 운영 담당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산지에 전처리·가공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산지 거점유통센터를 구축하여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2년부터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 5개소\*가 운영 중이며, 새롭게 지정된 3개소에 총 1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립 예정이다.

\* 5개소 : 강원도(속초시수협), 제주도(제주한림수협), 전라남도(완도금일수협), 경주시(경주시수협), 경상남도(경남고성 해승수협)

해양수산부는 산지거점유통센터 조성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사업계획의 타당성, 부지 및 자금조달계획, 마케팅 전략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인천의 경우 생산지와 소비지(수도권)에 모두 인접해 있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지역 특산물을 산지거점유통센터에서 바로 가공하여 소비지로 신속하게 운반함으로써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의 경우 산지거점유통센터에 콜드체인\* 시스템을 갖추어 위생적인 위판환경을 조성하고, 가공시설 등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맞게 구축하여 식품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 생산지부터 저온을 유지하여 유통시킴으로써 선도(鮮度)를 떨어뜨리지 않고 운송하는 방식

전라남도의 경우 전국 최대의 해조류 생산·유통거점을 목표로, 산지 거점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해조류 생산자단체의 조직화를 유도하고 유통단계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수산물 유통환경 및 소비유행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산지거점유통센터 10개소를 확보할 계획이며,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

## `18년 수산물산지유통센터(FPC) 사업대상 개요

| 구 분        | 인천시<br>(경인북부수협)                                                                                                                                                                                         | 강원도<br>(강릉시수협)                                                                                                                                                       | 전남도<br>(장흥스마트팜)                                                                                                                                                                               |
|------------|---------------------------------------------------------------------------------------------------------------------------------------------------------------------------------------------------------|----------------------------------------------------------------------------------------------------------------------------------------------------------------------|-----------------------------------------------------------------------------------------------------------------------------------------------------------------------------------------------|
| 사업규모       | 60억원/1개소                                                                                                                                                                                                | 60억원/1개소                                                                                                                                                             | 60억원/1개소                                                                                                                                                                                      |
| 연면적(m²)    | 2,137                                                                                                                                                                                                   | 2,910                                                                                                                                                                | 4,994                                                                                                                                                                                         |
| 주요시설       | 가공시설, 냉동설비 등                                                                                                                                                                                            | 가공시설, 위판장, 보관<br>시설 등                                                                                                                                                | 가공시설, 냉동설비 등                                                                                                                                                                                  |
| 주요<br>취급품목 | 새우젓, 건새우, 주꾸미 등                                                                                                                                                                                         | 오징어, 복어, 임연수 등                                                                                                                                                       | 해조류, 키조개 등                                                                                                                                                                                    |
| 사업추진<br>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화지역 새우젓 및 건새우 물류비용 절감</li> <li>- 경인지역 생산수산물 직판기능 확대</li> <li>- 지리적 여건을 활용하여 수도권에 고품질 수산물 공급</li> <li>- 단체급식, 대형식자재업체 등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시설과의 연계 및 유통구조 개편을 통한 물류비 절감</li> <li>- 콜드체인 구축 등 위생적인 위판환경 조성</li> <li>- 수산식품 안전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HACCP 가공시설 구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PC를 매개로 생산자 단체의 조직화를 유도해 유통단계 축소</li> <li>- 소비자 중심의 상품 개발과 새로운 시장 질서 및 유통체계 구축</li> <li>- 해조류 생산자 조직화를 기반으로 전국 최대의 해조류 전문 생산 및 유통 플랫폼 구축</li> </ul> |

